제 2 7 8 회 임 시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: 2383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유찬종 (더불어민주당, 종로구 제2선거구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유찬종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2017.12.26.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"상생협약 체결"과 "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"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상생협약은 개별당사자의 임의적사항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상생협약 체결의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며,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 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